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6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허종식 · 이학영
한준호 · 어기구 · 민병덕
김남국 · 한민수 · 김주영
박 정 · 허 영 · 김영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,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, 서리,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,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,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도로, 산불,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·생산·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,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·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3조의5 신설).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5(위험기상 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) ① 기상청장은 도로, 산림, 농업 및 해양 등의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(이하 “위험기상”이라 한다)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기상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다.

1. 도로살얼음·안개 등 도로 위험기상 정보
2. 건조·바람 등 산불위험성 등 산림 위험기상 정보
3. 서리·우박 등 농업 위험기상 정보
4. 해무·풍랑 등 해양 위험기상 정보

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·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3조의5(위험기상 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) ① 기상청장은 도로, 산림, 농업 및 해양 등의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(이하 “위험기상”이라 한다)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기상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도로살얼음·안개 등 도로 위험기상 정보</u> <u>2. 건조·바람 등 산불위험성 등 산림 위험기상 정보</u> <u>3. 서리·우박 등 농업 위험기상 정보</u> <u>4. 해무·풍랑 등 해양 위험기상 정보</u> <p><u>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·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